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3. 15) 상정
-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3. 15)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도 옥)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0. 1. 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6조·제19조·제21조·제22조 및 제24조)
- 임대주택사업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포함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면제 규정을 추가함(안 제12조)
-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이 당

초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감면 조례로 규정함(안 제15조의2)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호서식).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

일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제21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제22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제24조 중 “사업소세(재산할을 말한다)를” “주민세 재산분을”으로 하고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말한다)를”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52호
의결 년월일	2010. 3. 19 (제159회)

제출년월일 : 2010. 2.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0. 1. 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6조·제19조·제21조·제22조 및 제24조).
- 나. 임대주택사업자에 공무원연금공단이 포함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추가함(안 제12조).
- 다.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이 당초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감면 조례로 규정함(안 제15조의2).
- 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

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제21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

로 한다.

제22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제24조 중 “사업소세(재산할을 말한다)를” “주민세 재산분을”으로 하고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말한다)를”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 ----- ----- ----- ----- ----- ----- ----- ----- -----.</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 -----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3.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u>사업소세(재산할을 말한다)</u>를 면제하고, 전쟁기념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종업원할을 말한다)</u>를 면제한다.</p>	<p>-----  -----  -----<u>주민세</u>  <u>재 산 분 을</u>  -----  -----  -----<u>지방소득세</u>  <u>종업원분을</u>  -----  -----.</p>